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서기록

2023학년도 2학기 임시

일시 2023년 10월 30일
오후 7시

장소 학생회관 소강당



대의원 총원 91명 참석 54명 불참 37명

(개회)

지금부터 2023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임시 전학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회의는 회칙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개최된 임시 전학회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대의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자료 참고하시어 회의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회에 앞서 각 단위별 출결 확인을 진행할텐데요, 네,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셔서 위임장을 제출하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임을 받으신 분 대신에 위임을 하신 분 기준으로 출석을 불러드릴테니까 호명드리면 손들면서 대답해주시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직책을 생략하고 이름 석 자만 불러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결 확인)

출석 모두 확인했습니다.

전체 대의원 91명 중 본회의 참석인원은 5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학생회칙 제55조제1항 ‘전학대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에 의거하여 본 회의는 19시 16분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안 의결 시에는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주시면 되고, 회칙에 의거하여 여기 계신 대의원분들은 1인 1표씩 행사하실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발언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주시면 되고, 해당 발언은 모두 서기록 및 회의록에 기재될 예정이니 발언 전에는 소속 및 이름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즉, 출석인원이 46명보다 적어지는 순간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자동으로 휴회되고 7일 이내 재소집을 해야합니다. 참석해주신 대의원분들께서는 회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회의 진행 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족수 확인, 개회 선언, 의장 및 서기단 소개, 총학생회 회칙 및 전학대회 운영세칙, 논의/인준안건, 기타안건 및 건의사항,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장 및 서기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학년도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이자 제55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기계공학부 19학번 박근아입니다.

다음으로 서기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국장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19학번 김채운입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마이크가 잘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서 이런 마이크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제일 뒤에 분 잘 들리시나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잘 안 들리시거나 제가 말한 발언에서 다시 듣고 싶은 부분 있으면 손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총학생회칙 및 전학대회 운영세칙 안내입니다. 총학생회칙의 경우 오늘 회의의 주 안건인 만큼 잠시 후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전학대회 운영세칙에 나와 있는 회의 진행의 원칙과 의안 채택 방법 및 의사 진행과 관련된 규칙을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이니, 화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2학기 정기 전학대회에서도 다 말씀드렸던 만큼 간단하게 화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논의/인준 안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1.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 심의 및 의결
2.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독립단위 지위 해제

네, 우선 첫 번째 안건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 심의 및 의결' 진행하기 전에,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 및 제안 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은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 학과 및 전공 학생회, 특별기구 등 본회를 대표하는 모든 학생 자치기구의 존립 근거로, 본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최상위 규범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자과캠, 인사캠이 분화된 회칙을 사용함에 따라 여러 불편이 초래되었고 1992년 이후 공동 회칙 제정을 위한 여러 과정을 거쳐, 2022년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을 통해 통합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합'에 초점을 맞춘 회칙으로 학생사회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해 일부 조항의 수정 및 추가로 점진적 내실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제55대 총학생회장단과 2023년 회칙개정소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담은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대의기구 출결 형식 강화입니다. 자료 3페이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회칙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 대의기구의 대의원이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불이익이 주어지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2년 통합 회칙개정을 통해 연학대회와 전학대회 대의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해 출석을 대신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석하여도 별다른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실제 전학대회에서는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회의가 수차례 정회되어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의체 출석을 대의원 개인의 사명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그에 준한 책임

감이 부여될 수 있도록 대의기구의 위상에 걸맞은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결석계 제도를 신설하고, 위임장 혹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석하는 경우 회의록을 통한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하여 출결과 관련된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전학대회 회칙에 존재하는 (대의원의 의무) 조항을 중앙운영위원회 회칙에 추가하여 형식을 통일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전학대회 (대의원의 의무) 조항에 있던 위임장 관련 내용은 신설될 출결 조항으로 이전하였고, 학생회장단을 포함한 전학대회 대의원의 사퇴는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자료 4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해당 자료의 경우 편의를 위해 이전 회칙과 조항 번호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신설된 조항으로 밀리게 된 번호를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실제 개정안에는 밀린 조항 번호를 다 반영하여 공포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페이지부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42조 (대의원의 의무)에서의 위임 관련 조항은 삭제되었고, 제43조 (대의원의 출결)을 통해 결석 시 결석계 제출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42조제3항으로 대의원 직위 상실/획득 사실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입니다.

제51조는 연학대회와 모두 동일하게 개정되었으나, 전학대회의 경우 위임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중앙운영위원은 위임을 할 수 없다'에서 '확대운영위원은 위임할 수 없다'로 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확대운영위원은 선거로 당선된 선출직이기에 위임이 불가하도록 하기 위해 확대운영위원으로 위임 불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연학대회의 경우 대의원이 확대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6페이지 아래, 연석중앙운영위원회입니다.

연학대회 및 전학대회에 있던 (대의원의 의무) 조항과 개정하여 추가한 출결 관련 조항을 동일하게 추가하였으며, 이는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 확대회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좀 빠르게 넘어간 관계로 다 확인하시고 천천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인데요, 8페이지 마지막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안에서는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의 직위 상실/획득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실상 해당 직위의 분들은 전학대회 대의원이기도 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전학대회 (대의원의 의무) 관련 신설 조항과 내용이 동일하긴 하지만, 해당 안에 대해 각 단위에서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각 단위를 규정하는 조항에도 해당 조항을 조항을 추가한 것이라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네, 동일하게 해당 조항은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그리고 특별기구에도 다 적용이 되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어주시면 발언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학대학 부학생회장: 회의록에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회의록의 요약 버전이 자보에도 실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학생회장: 사실상 현재도 총학생회 계정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운영위원회의 출석 여부는 회의록 자보에 실리게 되어있는데요, 의도한 바는 결석 사실과 무단결석 사실이 실리는 것이긴 합니다.

화학과 학생회장: 107조에 보면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도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등의 내용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학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속이 아니고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학생회장: 네, 각 단과대에 보고를 하면 각 단과대가 중앙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직접 보고를 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신설한 조항입니다.

의과대학 3,4학년 대표: 의과대학의 경우 거리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도 사유를 인정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총학생회장: 의장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로 결석계를 사용해서도 인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 관련 조항의 보완입니다. 자료 10페이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총학생회칙 제120조 (회계연도) 제1항에는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본회의 재원은 매년 1학기 및 2학기로 나누어 집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시작되는 2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 전일까지의 기간이 충돌하여 정기 전학대회에서 예결산안을 심의 시 이 기간을 제대로 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회기에 1학기 개강 이전의 기간을 추가해 회계연도를 ‘초반기’, ‘중반기’, ‘종반기’로 나누어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전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에 언급되어 있듯, 기층단위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납부 받는 학생회비를 ‘자치회비’라고 명명함에 따라 총학생회칙 제119조 (학생회비)에 자치회비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고, 단과대, 독립단위 학생회,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관련 회칙에 (재정)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회비를 납부받을 수 있다는 조항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해당 내용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어주시면 발언권 넘겨드릴 텐데요.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한 관계로 지금 7시 30분인데 7시 32분까지 읽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바로 손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제113조 1항이 수정되었다고 표시되어있는데, 개정 전과 후의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오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장: ‘배분받는다’ 부분에 색깔 변화는 있는데, 개정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자과대 총학생회장: 네, 맞습니다.

총학생회장: 사실상 이 항에서는 개정된 부분이 없어서 그대로인 조항이라고 알고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과대 총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에 조금 수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1분 정도만 내용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뒤에 부분 먼저 진행하고 이 부분에 수정이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타 조항입니다. 자료 13쪽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충돌 조항을 방지하기 위해 단위기구 및 특별기구의 회칙이 개정 혹은 제정된 경우 형식상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 안건을 통해 보고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학생사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학생 자치기구의 최상위규범인 총학생회칙 내용 공유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 개정안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어주시면 발언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없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을 인준한다’, 즉 찬성하시는 대의원분들께서는 거수 부탁드립니다.

- 집계

‘상기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을 인준하지 않는다’, 즉 반대하시는 대의원분들께서는 거수 부탁

드립니다.

-집계

해당 안에 기권하시는 대의원분들은 거수 부탁드립니다.

- 집계

의결 집계 완료되어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참석인원 54중, 찬성 5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인준안건입니다.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독립단위 지위 해제’ 인준안인데요, 회칙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화면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인준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상황 설명부터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에 성균융합원 아래로 에너지과학과가 설립됩니다. 현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성균융합원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가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밖에 없기 때문에, 제98조의2 (독립단위) 제1항제2호를 보시면 ‘소속 단과대학이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학부 또는 학과’로 인정이 되어서 독립단위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과학과가 신설이 되게 되면서 성균융합원이 단과대가 되고,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는 독립단위에서 해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2024년도에 신설이 되는 학과인 만큼 2023년도까지는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를 독립단위로 인정을 하되 24년부터는 그 지위가 해제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인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98조의2 제2항을 보시면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캠퍼스회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해당 지위의 해제 또한 인준을 받아야한다고 판단을 했고, 해당 안에 대해서 이제 인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그럼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독립단위 지위 해제에 인준한다’, 즉 찬성이신 대의원분들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집계

‘2024학년도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독립단위 지위 해제에 인준하지 않는다’, 즉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집계

해당 안에 기권하시는 분들은 거수 부탁드립니다.

- 집계

총 참석인원 54중, 찬성 5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은 기타안건 및 건의사항입니다. 기타안건 및 건의사항 있으신 대의원분들께서는 손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으로 확인하고 마지막 순서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의 학생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대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다들 바쁜 와중에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2023학년도 2학기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19시 42분 기준 폐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